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명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063

발의연월일: 2020. 8. 19.

발 의 자:이명수·김희국·이채익

이주환 · 최승재 · 김영식

성일종 • 홍문표 • 최춘식

김예지 · 조경태 · 주호영

김승수 · 김형동 · 황보승희

권영세 · 강기윤 · 박성중

윤상현 · 김성원 의원

(209]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별정우체국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국민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·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난 60여년간 국민들에게 우편·예금· 보험 서비스를 제공해 오는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해 왔음.

하지만 별정우체국의 공공성,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여도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시설에 대한 지방세 특례원칙 등을 감안하면 별정우체 국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과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.

이에 노인복지시설, 종교단체, 사회단체, 정당 등 공익서비스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 있는 것과 같이 별정우체국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2022년 12월 31일까 지 면제하려는 것임(안 제72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2조제2항 본문 중 "재산세(「지방세법」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)를"을 "재산세(「지방세법」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) 및 「지방세법」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) 제7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2조(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	제72조(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
특례) ① (생 략)	특례) ① (현행과 같음)
② 피지정인이 과세기준일 현	2
재 별정우체국 사업에 직접 사	
용하는 부동산(「별정우체국	
법」 제3조의3에 따라 별정우	
체국의 지정을 승계한 경우로	
서 피승계인 명의의 부동산을	
무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	
를 포함한다)에 대해서는 <u>재산</u>	<u>재산</u>
세(「지방세법」 제112조에 따	세(「지방세법」 제112조에 따
른 부과액을 포함한다)를 2022	른 부과액을 포함한다) 및 「지
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, 별	방세법」 제146조제3항에 따른
정우체국에 대한 주민세 재산	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
분 및 종업원분을 2022년 12월	
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. 다만,	
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	
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	
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	
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	
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	
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	
아니한다.	

③ (생 략)

③ (현행과 같음)